

[한국호세코 주식회사] - 구매 약관

1. 용어의 정의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의 용어들은 각각 아래에 기술된 의미를 가진다:

"**관계회사**"는 맥락에 따라서 계약 당사자나 혹은 **회사나 공급자**의 관련 회사 또는 종속회사를 의미한다;

"**회사**"는 그 등록된 사무소의 주소지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정주로 74로 되어 있는 [한국호세코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130-81-01099)를 의미한다.

"**조건**"은 본 계약의 조건들을 의미하며 **회사와 공급자** 간에 서면으로 합의되는 어떠한 특별한 조건도 포함한다;

"**계약**"은 이 계약의 조건들과 주문서 및 관련 명세서를 포함하여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위해 **회사와 공급자** 간에 체결되는 모든 계약을 의미한다;

"**재화**"는 **공급자**가 이 계약에 근거한 주문서에 따라서 공급하는 상품과 제품, 물품이나 사물을 (이들의 일부분이나 여러 부분들을 포함하여) 의미한다;

"**주문**"은 **회사**의 공식적 구매 주문 양식을 통하여, 그 안에서 참조되는 모든 문서를 포함하여, **회사**에서 **공급자**에게 발행하는 재화나 용역에 관한 구매 주문을 의미한다;

"**용역**"은 이 계약에 근거하는 주문서의 내용에 따라서 **공급자**가 **회사**로 제공하기로 하는 용역을 의미한다;

"**명세서**"란 **회사**에서 재화나 용역에 관해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세목이나 명문화 문구를 의미한다;

"**공급자**"는 주문이 전달되는 법인 실체나 회사 혹은 개인을 의미한다.

2. 계약의 성립

2.1 계약은 본 약정에 명시된 조건들에 근거하며 기타의 모든 조건은 제외한다 (**공급자**가 견적서, 주문 확인서 및 기타 **공급자**에 의해 발행되는 모든 문서에 포함하였거나 이들과 관련하여 적용된다고 **공급자**가 주장하는 모든 조건들을 포함하여). **공급자**가 제시하는 모든 조건들은 **회사**에 의해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한 어떠한 효과도 가질 수 없다.

2.2 주문은 **회사**가 **공급자**에게 전달하는 제안이며 주문을 **공급자**가 받아 들임으로써 계약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회사**에 의해 그 이전에 철회되지 않는 한 주문은 **공급자**에 의해 주문서 일자 이후 7일 이내에 서면의 통지로 거절되지 않는 한 받아 들여진 것으로 간주된다.

2.3 주문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회사**의 승인된 대리인에 의해 서명되지 않은 이상 **공급자**에게 효력이 없다.

3. 변경

본 계약의 조건에 대한 변경은 **회사의** 승인된 대리인에 의해 명시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4. 보증

4.1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은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4.1.1 주문서와 기타의 관련 명세서 및 주문서에 표시되었거나 주문서에서 참조되는 표준 등의 내용과 수량, 품질 및 설명의 면에서 부합해야 한다;

4.1.2 품질기준을 충족하며 자재와 작업 처리에 있어서 결함이 없으며 시종 최상급의 자재와 처리기술을 적용하고 적절한 자질과 경험을 보유하는 인원에 의해서 합리적인 관리방법과 기술을 가지고 처리되어야 한다;

4.1.3 양 계약의 당사자 중 어느 한편에서 제공한 샘플, 디자인, 모의실험 또는 명세서와 모든 측면에서 동등해야 한다;

4.1.4 주문서나 명세서에 규정된 품질 또는 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4.1.5 주문서에서 명시적으로나 혹은 암시적으로 관련 목적이 표시된 경우 해당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4.1.6 관련 법률과 규정 또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기타의 문건의 내용과 해당 재화나 용역과 관련하여 효력을 가지는 한국, 유럽 및 국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포장, 납품, 운반, 저장, 설치 및 사용을 포함하여);

4.1.7 설계 또는 기타의 내재적 결함이 없어야 하며 (회사의 설계에 따라 재화가 공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4.1.8 계약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4.2 만일 4.1항의 **공급자** 보증 규정이 위반되었거나 재화나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에 표시되었거나 계약에 의해 부과된 의무나 보증 또는 요구사항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정된 시한까지 재화나 용역 또는 그 설치의 제공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및 본 계약 제7조에 따른 인도 이전 또는 인도 시점에 재화가 손상된 경우 **회사는** **공급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그러한 행동과 관련되는) 자의에 따라서 기타의 권리나 구제권에 대한 영향이 없이 다음의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행동을 취할 수 있다:

4.2.1 계약을 (전부나 일부) 해지하고 계약이 (혹은 관련된 일부가) **공급자**에 의해 전혀 착수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고; 또는

4.2.2 관련 재화와 (그 전부나 일부) 미 인도된 재화 때문에 효과적 혹은 상업적 사용이 불가능한 기 인도 재화를 거절하고; 또는

4.2.3 해당 재화의 이후 인도 분의 수취를 거절하고; 또는

4.2.4 다른 **공급자**로부터 대체 재화나 용역을 획득함에 있어서 **회사**에 합리적으로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 **공급자**로부터 배상을 청구하고; 또는

4.2.5 **공급자**에 대해서 자기 부담으로 용역을 재수행 하거나 7일 이내에 계약과 주문서, 명세서에 부합하는 재화를 재인도 하도록 요구하고; 또는

4.2.6 **공급자**의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처리하고;

(i) 이 계약과 주문서 및 명세서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재화와 용역에 대한 지급을 연기하고; 혹은

(ii) 재화와 용역의 대금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고; 또는

(iii) **회사**가 **공급자**에 대해 이전에 재화의 수선이나 대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재수행을 요구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회사**가 지급한 재화 또는 용역 대금의 일부나 전부의 상환을 요구하고; 또는

4.2.7 **공급자**의 계약 위반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배상을 청구한다.

4.3 **회사**가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이행된 것으로 하여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공급자**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에 대해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항변을 제출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한다.

4.4 **회사**가 이 계약에 의한 조건에 따라서 권리를 실행할 경우 **회사**는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공급자**가 관련 재화를 즉시 수거하여 **공급자** 자신의 비용으로 회수하여 가도록 요구할 수 있다.

4.5 이 계약에 명시된 **회사**의 권리는 기타 **회사**에 허용되는 법적인 구제권에 대해 부가적이다.

5. 가격과 지급

5.1 재화 및 혹은 용역에 대해 지급할 가격은 주문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최근의 견적 가격 혹은 최근에 **공급자**에 의해 청구된 가격과 동일한 가격 혹은 그 이후 가격의 인하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인하된 가격으로 한다. 주문서에 명시된 가격은 고정된 것으로 보며 **회사**에 의해 명시적으로 서면상 동의되고 직무 상 승인된 **회사**의 대리인에 의해 서명되지 않은 한 가격의 증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가격은 주문서에 명시된 화폐로 표시되며 화폐의 명시가 없는 경우 한국의 원화로 적용한다.

5.2 가격은 주문서에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상품 포장과 선적 포장, 상품 표시, 보험, 인도 비용, 수출입 관세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및 기타 재화와 용역 및 그 인도와 관련하여 **공급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5.3 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모든 대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부가세는 해당 공급 시점에 적용 가능한 경우 유효한 세율을 적용하여 가산되며 기타 해당 지급 대금에 부가되는 기타의 세금이나 부과금 등은 포함한다.

5.4 **공급자**가 다음 사항들에 해당하는 경우 대금의 지급이 연기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 지급에 따른 할인은 허용된다.):

5.4.1 **공급자**가 각 재화의 선적일 또는 용역의 수행 시에 별도의 관련 통지서와 각 인도분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한 청구서 및 관련 시험성적서를 보내지 않았거나; 혹은

5.4.2 **공급자**가 통지서와 선적 포장 및 선적품 명세서, 대금 청구서, 월별 명세서 및 기타 이들과 관련된 모든 교신에 주문번호와 중량표시, 수량 등을 분명하게 기록하지 않는 경우.

5.5 청구서가 모든 면에서 정확하게 작성되어 제출된 경우 지급은 상호 협의된 지급조건에 따라 이행된다. 모든 지급의 이행은 재화나 용역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혹은 계약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회사**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회사**가 이 계약에 따라서 지급기일 이후 10일 이내에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공급자**가 서면의 지급이행 독촉장을 전달한 경우 이후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각 시점 별 모든 기한경과 금액에 대해 시중 은행 기준금리에 2% 이내의 금리를 가산한 범위 내에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5.6 **공급자**는 법률 상의 이유나 기타 어떤 이유에서도 상계의 권한이 없다. **회사는 공급자**가 (혹은 그 관련회사가) 이 계약이나 혹은 기타의 계약에 의해 **회사**에 대해서 (혹은 그 관계 회사에게) 가지게 되는 어떤 유형의 청구권에 대해서도 상계의 권리를 가지며 혹은 이 계약이나 기타의 계약 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공급자**가 (혹은 그 관계회사가) **회사**에 대해서 (혹은 그 관계회사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채권 금액에 대해서 상계의 권한이 있다.

5.7 **공급자**는 재화의 인도 시나 그 이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에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시점 이전에 전달된 청구서는 재화의 인도시나 용역 제공의 완료 시점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청구서는 **회사**에서 시기 별로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 계약에 표시된 회사 주소의 외상채무 담당 부서(경리부)로 전달되어야 한다.

5.8 **공급자**가 **회사**에게 청구하는 가격은 **공급자**가 동종 혹은 유사 제품 또는 용역을 동일 또는 유사 수량 구매하는 여타의 구매자에게 적용하는 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회사는 공급자**가 통상 허용하는 조기지급, 대량구매 또는 수량 관련 할인 등에 대해 제한 없이 권리를 인정받는다.

6. 이행의 지연

6.1 서면으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인도와 선적, 이행, 완료 등에 대해 지정된 시점이나 기간은 필수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 **공급자**는 인도, 선적, 완료나 이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6.2 **회사는** 납기를 준수하지 않는 재화나 용역을 거절할 권한 또는 이들이 포함되는 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또한 이들의 거절이나 취소로 인하여 이미

납품된 재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들을 반환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거절과 취소 및 반환의 권리는 지연의 원인을 불문하고 또 계약의 위반에 대해 **회사**가 **공급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기타의 구제권에 대한 영향이 없이 또한 **회사**에 대한 부담이 없이 인정된다. 거절된 재화의 반환은 **공급자**의 비용과 위험으로 한다.

6.3 인도와 선적, 완료 및 이행의 지연에 관한 어떠한 양보도 어떠한 내용이든 **회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특히 이러한 포기가 직무상 승인된 **회사**의 대리인에 의해 명시적으로 서면상 동의되고 서명되지 않은 경우에 그러하다.

6.4 **회사**는 합리적으로 통제가 가능하지 않은 원인에 의해 필요한 경우 그 선택에 따라서 주문이나 그 중 미이행 부분에 대해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7. 인도와 선적포장 등

7.1 재화의 인도는 주문서에 표시된 해당 재화에 대한 **회사**의 인도 지시에 따라서 엄정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관세지급부 인도조건(DDP)으로 **회사**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인도하여야 한다. (Intercom 2010). **회사**는 각 주문서에 적용되는 서면의 인도 또는 이행 지시서를 **공급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주문서에 포함된 재화나 용역의 인도나 이행을 수령하지 않거나 그 대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7.2 주문에 표시된 내용을 초과하여 인도된 재화나 이행된 용역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7.3 모든 재화는 운송 중의 손상이나 감손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회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서 운송비가 정산되어야 하며 재화의 포장에는 내용물에 대한 기술과 수량 및 **회사**의 주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7.4 **회사**는 사전의 합의가 없는 한 포장용 자재나 용기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재화에 대한 포장용 자재나 팔레트를 **공급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7.5 **회사**는 운송인에게 손실이나 손상, 지연, 유치나 운반 또는 인도의 부재 등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없다.

7.6 **공급자**는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에 재화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신고서나 문서를 제공하기로 합의한다.

7.7 인도시기는 본 계약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회사**는 명시된 인도 시점 이전에 인도되는 재화의 수령할 의무는 없으나 그 권리를 가진다.

7.8 **회사**는 언제든지 14일 이전의 사전 통고를 통해 그 인도 지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7.9 **회사**는 명세서나 주문서에 표시된 것과 다른 재화의 납품수량을 수령할 의무가 없다.

7.10 **공급자**는 **회사**가 해당 재화를 보관하고, 운송하고, 다루고, 조립 또는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급자**로서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들과 (재화의 제조에 사용된 자재에 관한 관련 법규나 책임 있는, 전문적 또는 법률 단체의 조언을 포함하여)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공급자**가 취한 조치나 취할 행동에 대한 제안 및 **회사**가 취해야 하는 조치 등에 대해 **회사**에 신속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8. 회사의 재산 샘플 등

8.1 모든 샘플과 도안, 다이, 금형, 도면, 자재 또는 기타 **회사**에 의해 공급되거나 대금이 지급된 것들은 **회사의 재산**이거나 **회사의 재산**이 되며 요청이 있을 시 모든 복제품을 포함하여 양호한 질서와 상태로 운임을 지불하여 반환되어야 하며 원인을 불문하고 이들에 대한 손실이나 손상의 회복 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공급자**는 **회사**로부터의 주문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이러한 항목들을 사용하거나 복제할 수 없다.

8.2 **공급자**는 (혹은 승인된 하도급자나 양수인 또는 공급자) 이 계약에 의한 주문과 관련 사안 등을 기밀로 취급하여야 하며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이들이나 그 일부를 공개할 수 없다.

8.3 **공급자**는 회사의 샘플, 도안, 다이, 금형과 도면에 의해 제작된 부품을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견적을 하거나 제공하지 않기로 동의한다.

9. 소유권의 이전과 위험

9.1 소유권은 주문서에 표시된 장소 또는 기타 합의된 장소에서 인도가 일어날 때 이전되는 것으로 하며 인도 시점 이전에 대금이 완불되는 경우에는 그 완불 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하며 어느 경우에도 제10조에 표시된 **회사의** 권리에 영향이 없이 소유권이 이전된다.

9.2 **공급자**가 **회사의** 요청에 의해 인도를 연기하는 경우 해당 재화에 대한 소유권은 연기가 없었더라면 재화가 인도되었을 시점에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9.3 **회사의** 요청으로 재화의 인도가 연기된 경우를 포함하여 재화의 인도가 실제로 일어날 때까지 **공급자**가 재화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

10. 거절의 권리

10.1 **회사**는 인도 후 검사를 위한 합리적인 시간이 경과하거나 또는 재화의 결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까지 재화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오해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재화의 인도 이전이나 이후에 **회사**가 검사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나 배달수령증 혹은 기타 재화의 물리적 수령을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을 하는 것은 관련 법에 따른 재화의 승인 또는 그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들은 또한 재화의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또는 재화가 계약이나 주문서, 명세서에 부합하지 않음이 발견되는 경우 수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하거나 반환할 수 있는 **회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0.2 **회사**는 **공급자**의 위험과 비용으로 재화를 **공급자**에게 반환하거나 **공급자**에게 재화가 거절되었음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이후 재화는 **공급자**가 위험을 부담하며 그 처분에 따른다.

10.3 부분적 인도는 **회사**에 의해서 전부나 일부가 거절될 수 있다.

11. 면책

11.1 **회사**의 다른 권리에 영향이 없이 다음의 사항들과 관련하여 **회사**나 그 관계 회사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겪게 되는 경제적 손실과 이익의 상실 및 수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성질을 불문하고 모든 행동과 손해배상 (어떠한 성질이나 유형이든 **회사** 또는 제3자 소유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손실이나 손상에 관한 손해배상 또는 인원의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요구, 손상, 손실, 원가, 비용 (제한 없이 법률비용을 포함하여) 등에 대해 **공급자**는 요구가 있을 시 **회사**와 그 관계 회사들을 면책하게 하며 그 면책 조건을 유지하기로 동의한다.

11.1.1 **회사**가 재화를 사용, 구매, 공급 또는 판매하는 것으로 인하여 재화와 용역이 제3자에게 지급할 로열티를 포함하여 제3자의 특허권, 의장등록권, 저작권, 상표권 또는 기타 산업적 또는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클레임 (**회사**의 명세서나 설계에 따라서 제공된 범위의 재화나 용역을 제외하고); 또는

11.1.2 본 계약에 의한 계약상의 의무를 **공급자**가 위반하는 것이나 법률적 의무의 태만이나 위반을 포함하여 본 계약에 관련된 표시, 진술, 부정 행위나 누락; 혹은

11.1.3 계약의 효력 발생 또는 종료와 관련하여 **회사**나 그 관계 회사의 직원으로 또는 기타 계약 상의 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인하여 그 고용이 **공급자**나 그 관계 회사로 이전되는 인원들 또는 그들의 고용이나 관련 청구권이 동일하게 이전된다고 주장하는 인원들의 고용이나 해고; 또는

11.1.4 본 계약의 종료로 인한 **공급자**나 그 관계 회사 및 그 하도급자의 직원들의 해고 (또는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공급자**나 관련회사 또는 하도급자의 직원이 되었을 인원의 고용 종료).

12. 검사

12.1 **공급자**는 **회사**가 적당한 시기에 **공급자**의 작업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제조과정의 주문재화를 검사하거나 제공된 용역의 결과 혹은 용역에 사용된 자재를 검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 **공급자**는 **회사**가 **공급자**의 작업장이나 기타의 장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당한 시설을 제공하거나 준비하여야 한다.

12.2 이러한 검사는 **공급자**의 어떤 의무를 면제하여 주거나 또는 재화의 수락을 의미하지 않는다.

13. 기밀유지

- 13.1 **공급자**는 이 계약의 당사자의 지위로 인하여 공개되거나 획득된 모든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 계약을 정당하게 이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이유로 **회사**의 사전 서면의 동의 없이 이들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 13.2 이 14조의 기밀유지 의무는 **공급자**가 이 계약의 기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 영역에 존재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나; 이 계약의 발효 이전에 **공급자**의 서면 기록에 존재하면서 기밀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정보나; 권리를 가진 제3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공급자**에게 공개된 정보나 또는 관련 법규나 법원, 정부 또는 기타 합법적인 사법기관의 명령에 의해 공개가 요구된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13.3 **공급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의 동의 없이 이 계약의 존재를 발표 또는 공표하거나 이 계약의 규정들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14. 건강, 안전 및 환경

- 14.1 **공급자**는 **회사**나 그 관계 회사 또는 그 고객의 장소에 있을 때 수시로 변경되는 건강, 안전 및 환경 관련 법규의 규정과 (직장 건강과 안전에 관한 법률과 유해 물질의 통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공장 검사관이나 관련 법률에 의해 승인된 검사자의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 14.2 **공급자**는 재화 또는 주문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자재들이 올바르게 사용될 때 안전하고 건강이나 환경에 위험이 없다는 것을 보증해야 하며 **공급자**는 그들의 설계와 시험 및 사용과 관련된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한 정보가 **회사**에 의해 요청되었는지를 불문하고).
- 14.3 **공급자**는 적용되는 국내법을 이행할 뿐 아니라 계약의 조건 그리고/또는 재화가 기계류 지침 2006/42EC(개정 사항들을 포함하여)에 적용된다면 이를 보증하여야 한다. 재화에는 '기계류 설계 및 건조와 관련된 필수적 건강과 안전 요구사항'의 준수를 나타내기 위해 "CE" 표식이 있어야 하고, **공급자**는 이들 재화에 "CE" 표식이 있음을 보증해야 하며 인도 시 "자기적합성 선서" 또는 "편입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4.4 **공급자**는 **회사**의 모든 관련 정책, 현장의 규정, 지시 및 안전 규칙과 관련 법률, 규정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그 사용인과 대리인 및 하도급자들이 이들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15. 지적 재산권

- 15.1 계약이 **회사**의 설계나 명세서에 따른 제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공급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얻어지는 설계나 제조방법에 대한 발명이나 개선사항들을 **회사**에 전달하기로

동의한다.

15.2 그러한 발명이나 개선 및 관련 특허권이나 의장등록권, 도면에 관한 저작권과 관련 문서와 명세서 등은 **회사**의 소유가 된다. **공급자**는 회사의 비용으로 **회사**가 특허권이나 의장등록권 및 기타 유사한 권리를 전세계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16. 종료

16.1 다음 사항들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이러한 계약의 종료에 따라서만 발생하는 **공급자**의 손해를 보상 또는 배상하지 않고 **공급자**에 대한 서면의 통지로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6.1.1 **공급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16.1.2 **공급자**가 계약의 위반에 대해 서면으로 회복 또는 위반의 중지를 요구 받은 뒤 30일 이내에 계약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회복이 가능함에도 회복을 하지 않거나 위반을 계속하는 경우;

16.1.3 **공급자**가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발적 화의를 신청하거나 **공급자**에게 한시적 명령이 내려지거나 기타 **공급자**와 그 채권자 간에 화해나 타협 또는 화의의 신청을 위해 어떠한 절차나 협상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16.1.4 다음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i) **공급자**가 지급불능으로 간주되는 경우; 또는

(ii) 해산의 결의를 목적으로 **공급자**가 회의를 소집하거나 해산의 결의가 있는 경우; 또는

(iii) **공급자**가 해산 명령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또는

(iv) **공급자**에 관해 관재인의 선임 신청이 있었거나 관재인 선임신청 의사의 통지가 있었던 경우; 또는

(v) **공급자**에 대해 관재인을 선임하기 위해 **공급자**나 제3자에 의해 조치가 취해진 경우; 또는

(vi) **공급자**가 사업의 전체나 일부, 집행, 재산, 자산 등에 관해 관재인이나 수탁관리인 등을 선임받은 경우; 또는

(vii) **공급자**가 자발적 화의의 신청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였거나 자발적 화의가 통과된 경우; 또는

(viii) **공급자**나 그 공동 출자자가 통합도산법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인 근거에서 지급불능으로 판단되거나 또는 관련하여 파산신청이 접수되었거나 파산명령이 내려진 경우; 또는

(ix) **공급자**나 그 공동 출자자가 통합도산법의 규정에 따라 자발적 화의를 신청하였거나 한시적 명령이 내려 졌거나 또는 **공급자** 등과 그 채권자 사이에 화해나 타협 또는 화의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또는 협상이 개시된 경우;

(x) **공급자**에 대해 위 17.1.4항의 내용과 같은 또는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법률적 절차가 해당 사법 관할 구역에서 진행 중인 경우나 또는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xi) **공급자**나 그의 공동출자자가 사망하거나 정신보건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질환을 보유하게 되든가 또는 유예 여부에 관계 없이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

16.2 위 17.1.3항과 17.1.4항에 규정된 **회사**의 계약 해지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공급자**나 관재인, 수탁관리인, 청산인 (해당되는 경우에) 등에게 계약의 정당하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 합의되는 금액의 보증의 제공을 전제로 계약의 이행을 위한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6.3 계약의 종료는 계약의 어느 일방에 대해 종료시점까지 발생한 권리나 구제권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6.4 이유를 불문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16.4.1 (17.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17.4항에 표시된 내용을 제외하고 (그 범위에 대해서만) 당사자 간의 관계는 소멸한다;

16.4.2 계약의 종료 시 혹은 그 후에 효력이 개시되거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명시적 혹은 암시적으로 의도된 계약 조항은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며 효과가 있다;

16.4.3 **공급자**는 즉시 종료일 현재 보관하고 있는 기밀 정보와 해당 사본을 포함하여 모든 **회사** 소유의 재산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공급자**에게 보내진 자재, 도구, 물품 등을 포함하여) 모두 **회사**로 반납하여야 (혹은 **회사의** 해당 서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파기) 하며 또 이의 완료를 보증하고 이들 기밀 정보를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16.4.4 **회사가**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달리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모든 유효한 계약과 주문은 종료된다.

17. 양도와 하도급

17.1 **공급자**는 회사의 사전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17.2 **공급자**는 자재나 재화의 사소한 부분이나 제3의 제조업자가 주문서나 명세서에 기재된 일부의 재화를 제외하고 **회사의** 사전 서면의 동의 없이 계약의 전체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또한 그러한 동의는 **공급자**를 계약상의 어떠한 의무로부터도 면책하지 않는다.

17.3 **회사는** 계약으로부터의 효익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양도가 있는 경우 계약서 상의 **회사**에 대한 언급은 양수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회사는** 언제든지 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전체나 부분적으로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이전하거나 담보로 하거나 위탁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18. 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어떠한 문제점이나 분쟁 또는 클레임 등은 (불법행위 클레임이나 법규 위반에 대한 클레임 등 그 성질상 계약적인 것과 비계약적인 것을 모두 포함해서) 대한민국법(국제물품매매계약에 대한 UN 협약을 제외한)에 의해서 해석되고 다루어 진다.

19. 사법권

이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이나 클레임은 양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대한민국 법원의 비전담 관할에서 다루어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단독 선택에 따라서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나 클레임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조정규칙에 따라 동 규칙에 의해 지명되는 1인 이상의 중재자에 의해 최종 결정될 수 있다. 그러한 중재는 영국의 런던에서 영어로 진행된다. **회사**가 중재위원회에 사안을 제소하기로 결정하는 시점에서 **공급자**에 의한 법원 소송절차가 진행된 경우 중재위원회의 이의가 없다면 그러한 소송절차를 중단하기로 합의한다.

20. 표제

이 계약의 표제들은 편의상 선택된 것이며 계약조항의 해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1. 허가

만일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회사**가 국내나 해외의 정부나 기타 권위 기관으로부터 허가나 면허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 계약은 필요한 시기에 그러한 허가나 면허가 사용가능 하다는 조건부로 성립한다.

22. 보험

22.1 **공급자**는 항시 자신의 비용으로 평판이 좋은 보험사를 통하여 계약 상의 의무에 적절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피보험 상태를 유지한다.

22.2 **공급자**는 **회사**로부터 서면의 요청이 있을 때 **회사**에 이 계약과 관련하여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는 모든 보험증권에 대한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회사**에 의해 서면으로 요청되는 경우 보험 갱신시의 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을 **회사**로 전달한다.

22.3 **공급자**의 계약 이행과 관련된 분쟁이나 법률 행동, 클레임 등의 사안을 처리할 목적으로 **회사**나 **회사**의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공급자**는 모든 보험약정에 대한 정보나 지원 및 조언을 제공한다.

23. 통지

이 계약에 따라 전달되는 통지나 기타 문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일등급 서신우편으로 선불 인편 전달되거나 팩시밀리로 전달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명시된 주소나 상대방이 서면으로 통지하는 주소로 전달된 경우 적법하게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으로 보낸 경우 보낸 뒤 48시간이 경과할 때 그리고 팩시밀리로 전달되는 경우는 송신 후 단말기 응답신호를 받았을 때 통지문의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 한다.

24. 무효

어느 시점이든 이 계약의 일부가 효력이 없거나 또는 기타 어떠한 법률 환경에서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 부분은 이 계약에서 삭제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결과 계약서의 기타 부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5. REACH 규정

만일 **공급자**가 REACH 규정(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C) No.1907/2006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에 정의된 물질이나 혼합물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자**는 REACH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들을 인지하고 있으며 해당 물질이나 혼합물의 인도시 그 규정의 의무사항들을 이행한다고 보증한다. **공급자**는 REACH 규정에 따라서 등록되었거나 사전 등록된 물질이나 혼합물 만을 **회사**에 인도한다고 보증한다. REACH 규정 조항의 위반시 도급자는 **회사**를 면책하고 정부기관의 클레임, 모든 손실, 손상, 원가, 비용 등 이 계약의 위반과 관련된 어떠한 제3자로부터의 클레임으로부터도 **회사**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 **공급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REACH 규정의 부록 XIV부에 포함된 단일물질이나 혼합물 또는 물품들을 **회사**에 공급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26. 뇌물방지 규정

26.1 공급자는 (직원, 하도급자 또는 대리인 또는 공급자 및 그 관계회사(주문관계인)를 대신해서 일하는 다른 제3자를 포함하여) 한국, 유럽 및 국제 뇌물방지 규정(뇌물방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6.2 **공급자**는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26.2.1 **공급자**는 뇌물방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26.2.2 **공급자**는 뇌물방지 규정과 관련하여 뇌물범죄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나 기소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26.2.3 **공급자**는 뇌물방지 규정과 관련된 혐의에 대한 조사나 기소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바가 없다.

26.3 **공급자**는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26.3.1 **공급자**는 계약의 종료 시까지 **공급자**와 관련된 인원들이 뇌물방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시키기 위한 적당한 업무절차를 가지고 있거나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26.3.2 **공급자**는 **회사**나 **회사의** 사용인, 하도급자 또는 대리인이 뇌물범죄에 가담하게 하거나 뇌물방지 규정과 관련하여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고 행해지도록 허용하지도 않겠다; 그리고

26.3.3 **공급자**는 자신이나 그 관련자가 본 27조의 **공급자**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잠재적으로 위반한 것을 인지하였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즉시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그러한 통지는 **공급자**의 의무의 위반 또는 잠재적 위반과 관련된 조건에 관해 모든 상세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27. 일반

27.1 **회사의** 관계 회사들은 계약의 규정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타의 어떤 제3자도 관련 법에 근거하여 본 계약의 조건을 시행할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이 조건은 누구든 동 법률에 의하지 않고 가지고 있거나 사용 가능한 권리나 구제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계약의 종료, 폐지, 변경의 합의, 계약에 의한 포기나 결정 등에 대해 계약의 당사자들이 가지는 권리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7.2 이들 계약의 조건들은 **공급자**로부터 전달되는 어떤 형태의 견적서나 승인양식이나 인도양식이나 청구서나 기타 문서 또는 서신 등 다른 문서의 조건들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그러한 조건들은 **회사**에 의해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수락되지 않는 한 어떠한 효력도 없다.

27.3 이 계약의 규정들은 법규나 관습법에 의해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에게 부여되는 조건이나 보증(명시적 및 암시적), 권리, 구제권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가 가지는 권리와 구제권은 기타의 **회사의**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되는 어떠한 조건이나 보증, 권리, 구제권 등에 대한 대체로 간주되지 않으며 부가적이다.